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 예정인 갑상샘기능저하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별 판정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장애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및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으로 질병명을 변경하고, 상이등급 7급 판정기준에 파킨슨증의 장애내용을 일부 반영함(안 별표 4 제4호나목)
- 나. 갑상샘기능저하증 및 방광암의 등급별 판정기준 등을 정함(안 별표 4 제5호가목 및 나목)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급,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7급에 각각 13), 2), 12), 11), 15) 및 16)을 신설함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5급 5106	13) 방광암으로 근치방광절제술 이후 인공방광조성술을 시행한 사람
6급 1항 5107	2) 방광암으로 부분방광절제술 또는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6급 2항 5108	12)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 후 방광내 약물주입요법(항암제 또는 면역치료제)을 받은 사람
6급 3항 5110	11)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재시행 포함)한 사람
7급 5111	15)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을 말한다) 또는 점액성부종

	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샘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16)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나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3급 4110 장애내용란 중 4)의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으로 하고, 같은 목 4급 4111 장애내용란 중 2)의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으로 하며, 같은 목 5급 4112 장애내용란 중 4)의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으로 하고, 같은 목 6급 1항 4113 장애내용란 중 4)의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으로 하며, 같은 목 6급 2항 4114 장애내용란 중 8)의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으로 하고, 같은 목 7급 4115 장애내용란 중 4)의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으로, “보이는”을 “보이거나, 경미하게 양측 침범을 보이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가목7)나) 중 “판정한다(예를 들면, 방광암으로 방광을 완전 적출하여 완치되었다면 상이는 방광

완전소실에 상응하는 장애로 평가한다)”를 “판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3급 5104 장애내용란 중 4)의 “방광셋길”을 “방광루형성술”로 하며, 같은 목 5급 5106 장애내용란에 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6급 1항 5107 장애내용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방광암으로 근치방광절제술 이후 인공방광조성술을 시행한 사람

2) 방광암으로 부분방광절제술 또는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별표 4 제5호나목 6급 2항 5108 장애내용란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6급 3항 5110 장애내용란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7급 5111 장애내용란에 15) 및 16)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2)가)를 삭제하며, 같은 2) 나) 및 다)를 각각 가) 및 나)로 하고, 같은 2) 나)(종전의 다)) 중 “요로셋길”을 “요실금”으로 한다.

12)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 후 방광내 약물주입 요법(항암제 또는 면역치료제)을 받은 사람

11)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재시행 포함)한 사람

15)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을 말한다)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샘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16)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신·구조문대비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u>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u>		<u>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u>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가. 장애 측정방법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가. 장애 측정방법	
1)~15) (생략)		1)~15) (현행과 같음)	
나. 상이등급 내용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1급 1항 4101	(생략)	1급 1항 4101	(현행과 같음)
1급 1항 4201	(생략)	1급 1항 4201	(현행과 같음)
1급 2항 4116	(생략)	1급 2항 4116	(현행과 같음)
2급 4108	(생략)	2급 4108	(현행과 같음)
2급 4203	(생략)	2급 4203	(현행과 같음)
3급 4110	1)~3) (생략) 4) <u>파킨슨병</u> 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극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3급 4110	1)~3) (현행과 같음) 4) <u>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u> 에 ----- ----- -----
4급 4111	1) (생략) 2) <u>파킨슨병</u> 에 의한 임상 증상이	4급 4111	1) (현행과 같음) 2) <u>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u>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중등도로 체간 침범을 보 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u>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에</u> ----- ----- -----
4급 4205	(생 략)	4급 4205	(현행과 같음)
5급 4112	1)~3) (생 략) 4)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중등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5급 4112	1)~3) (현행과 같음) 4) <u>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 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에</u> ----- ----- -----
5급 4206	(생 략)	5급 4206	(현행과 같음)
6급 1항 4113	1)~3) (생 략) 4)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5) (생 략)	6급 1항 4113	1)~3) (현행과 같음) 4) <u>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 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에</u> ----- ----- ----- 5) (현행과 같음)
6급 1항 4207	(생 략)	6급 1항 4207	(현행과 같음)
6급 2항 4114	1)~7) (생 략) 8)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9) (생 략)	6급 2항 4114	1)~7) (현행과 같음) 8) <u>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 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에</u> ----- ----- 9) (현행과 같음)
6급 2항 4208	(생 략)	6급 2항 4208	(현행과 같음)
7급	1)~3) (생 략)	7급	1)~3) (현행과 같음)

4115	4)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5) (생 략)	4115	4)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 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거나, 경미하게 양측 침 범을 보이는 사람 5) (현행과 같음)
7급 4209	(생 략)	7급 4209	(현행과 같음)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6) (생 략) 7) (생 략) 가) (생 략) 나) 근치 후 종양으로 인한 기능장 에는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판정한다(예를 들면, 방광암으로 방광을 완전 적출하여 완치되었다면 상이는 방광 완전소 실에 상응하는 장애로 평가한다). 8) (생 략) 나. 상이등급 내용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판정한다. 8) (현행과 같음)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1급 3항 5102	(생 략)	1급 3항 5102	(현행과 같음)
2급 5103	(생 략)	2급 5103	(현행과 같음)
3급 5104	1)~3) (생 략) 4) <u>방광궤양</u> , 신루(腎癰)・요관	3급 5104	1)~3) (현행과 같음) 4) <u>방광루형성술</u> , -----

	피부문합을 시행하여 영구적으로 요도를 통한 배뇨를 할 수 없는 사람 5)~16) (생 략)		----- ----- ----- 5)~16) (현행과 같음)
3급 5201	(생 략)	3급 5201	(현행과 같음)
4급 5105	(생 략)	4급 5105	(현행과 같음)
5급 5106	1)~12) (생 략) 13) <신 설>	5급 5106	1)~12) (현행과 같음) 13) 방광암으로 근치방광절제술 이후 인공방광조성술을 시행한 사람
5급 5202	(생 략)	5급 5202	(현행과 같음)
6급 1항 5107	(생 략) 2) <신 설>	6급 1항 5107	1) (현행과 같음) 2) 방광암으로 부분방광절제술 또는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6급 1항 5203	(생 략)	6급 1항 5203	(현행과 같음)
6급 2항 5108	1)~11) (생 략) 12) <신 설>	6급 2항 5108	1)~11) (현행과 같음) 12)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 중앙절제술 후 방광내 약물 주입 요법(항암제 또는 면역 치료제)을 받은 사람
6급 2항 5205	(생 략)	6급 2항 5205	(현행과 같음)
6급 3항 5110	1)~10) (생 략) 11) <신 설>	6급 3항 5110	1)~10) (현행과 같음) 11)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 절제술을 시행(재시행 포함)한 사람
7급 5111	1)~14) (생 략) 15) <신 설>	7급 5111	1)~14) (현행과 같음) 15)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심

			<u>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을 말한다) 또는 점액성 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샘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u> 16)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7급 5204	(생 략)	7급 5204	(현행과 같음)
다. 준용등급 결정 1) (생 략) 2) 방광장애 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2급(5103)을 인정한다. 나)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은 5급(5106)을 인정한다. 다) 항상 요로색질을 동반하는 정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7급(5111)을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현행과 같음) 2) 방광장애 가) <삭 제> 가) (현행 나)와 같음) 나) -- 요실금을 ----- ----- ----- 6.~8. (현행과 같음)	
6.~8. (생 략)			